



환경부

## 환경부

수신 한국환경공단이사장

(경유)

제목 생분해성수지제품에 대한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 안내

---

1.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'생분해성수지제품'이란 통상적으로 회수가 곤란한 제품에 분해가 용이한 생분해성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합니다.
3. 생분해성수지제품의 인증취지, 제품의 성분 및 재활용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기 위한 재활용의무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.
4. 다만, 2022년 1월 3일 「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」 고시 개정에 따라 통상적으로 회수가 곤란한 제품이 아닌 1회용품(식탁보, 봉투) 등은 '22년부터 신규인증 신청이 불가하고, '24년 말 기인증 제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인증이 종료됩니다.
5. 이에 따라 기인증이 종료되거나 생분해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인증받지 못한 제품은 재활용의무 대상으로 관리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리니 향후 업무에 참고해주시고,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및 회원사가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